

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(수상대상자) ①문화상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 당해년도 9월 1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는 자(과거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9월 1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.

②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.

제3조제3호중 "예술부문"을 "문화예술부문"으로 하고, 동조 제5호중 "새마을운동부문"을 "지역개발부문"으로 한다.

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교육부문

제7조제2항중 "간사와 서기는 문화예술과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"를 "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4. 9. 9.

제안자 ; 박만순의원외5인

수정이유

문화상 수상부분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공헌한자의 시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

수정주요골자

충청북도문화상조례 제3조제7호로 “교육부문” 신설(안 제3조)

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교육부문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(안)	수 정 (안)
<p>제3조(수상부문) 문화상 의 수상부문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인문사회과학부문</p> <p>2. 자연과학부문</p> <p>3. <u>예술부문</u></p> <p>4. 체육부문</p> <p>5. <u>새마을운동부문</u></p> <p>6. <u>언론출판부문</u></p>	<p>제3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2. -----</p> <p>3. <u>문화예술부문</u></p> <p>4. -----</p> <p>5. <u>지역개발부문</u></p> <p>6. -----</p>	<p>제3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2. -----</p> <p>3. -----</p> <p>4. -----</p> <p>5. -----</p> <p>6. -----</p> <p>7. 교육부문</p>

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 (수상대상자) ①문화상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 당해년도 9월 1일 현재 5년 이상 거주하는 자(과거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9월 1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.

②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.

제3조제3호중 "예술부문"을 "문화예술부문"으로 하고, 동조 제5호중 "새마을운동부문"을 "지역개발부문"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중 "간사와 서기는 문화예술과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"를 "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○ 충청북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(안)

현행	개정
<p>제2조 (수상대상자) ①문화상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내에 당해년도 10월 1일 현재 5년이상 거주하는 자(과거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10월 1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)로 한다.</p> <p>②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.</p> <p>제3조 (수상부문) 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인문사회과학부문 2. 자연과학부문 3. 예술부문 4. 체육부문 5. 새마을운동부문 6. 언론출판부문 <p>제7조 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.</p> <p>②간사와 서기는 문화예술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.</p>	<p>제2조 (수상대상자) ① - - - - - - - - - - 9월 1일 - - - - - - - - - - (- - - - - 9월 1일 - - - - -)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.</p> <p>② - - - - -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부문의 문화상도 다시 받을 수 없다.</p> <p>제3조 (수상부문) - - - - - - - - - - 1. - - - - - 2. - - - - - 3. <u>문화예술부문</u> 4. - - - - - 5. <u>지역개발부문</u> 6. - - - - -</p> <p>제7조 (간사와 서기) ① - - - - - - - - - - ②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.</p>